

「 행복나눔 통장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행복나눔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 및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MMDA,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및 법인으로 고객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 4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(이하 '원가일'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보통예금 : 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, MMDA : 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- ① 은행은 개인가입자에 한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익월 말까지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기존의 수수료면제 통장에서 전환하신 고객은 제외합니다.
- ③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"우대요건"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 1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 요건 중 2건 충족 시 월 2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월 100회까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

1. 행복나눔 적금 가입 및 유지 시
2. 당행에서 신용대출 1천만원 이상 유지 시
(한도대출인 경우 동 상품을 한도계좌로, 일반대출인 경우 이 예금을 이자납입계좌로 지정)
3.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
4. 은행 적립식예금과 적립식펀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시
5. 이 예금의 월 평잔 1백만원 이상 유지 시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

1.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2.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3.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제 6 조 기타

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.1%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 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 단,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(500좌)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